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9. 4 선고 2024가단1055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소송대리인 D

변 론 종 결 2024. 8. 14.

판 결 선 고 2024. 9. 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
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
나. 2023. 9. 25.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의 소유자인 사실, 피고는 2023. 9. 25.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·수익하고 있는 사실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월 차임 상당액이 300,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~3호증, 갑 제6,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2. 주장 및 판단

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·수익할 권한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,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2023. 9. 25.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임차하였으므로 사용·수익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갑 제2호증(부동산임대차계약서)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, 달리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동혁

별지